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 북 구
(여성가족과)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안 번호	314
----------	-----

제출년월 : 2024년 8월

제출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맞벌이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현재 운영 중인 가정어린이집 1개소의 국공립 전환, 민간(관리동)어린이집 4개소의 국공립 신규 설치와 기존에 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중 위탁기간이 2025년 상반기에 만료되는 시설의 재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규위탁 대상 시설

연번	시설명	소재지 (행정동)	정원/현원	면적	비고
1	해와별 어린이집	화랑로48길16 (석관동)	20/20	65㎡	전환 설치 (가정→국공립) 무상사용기간:10년 개원예정일:2025.3월
2	(가칭)장위자이레디언트 1단지 어린이집	장위동 62-1번지 일대 (장위3동)	58/-	399㎡	신규 설치 개원예정일:2025.4월
3	(가칭)장위자이레디언트 2단지 어린이집	장위동 62-1번지 일대 (장위2동)	56/-	396㎡	
4	(가칭)장위자이레디언트 3단지 어린이집	장위동 62-1번지 일대 (장위3동)	41/-	283㎡	
5	(가칭)장위자이레디언트 4단지 어린이집	장위동 62-1번지 일대 (장위2동)	27/-	173㎡	

- 1) 위탁기간 : 개원일로부터 5년(예정)
- 2) 수탁기관 선정 : 24년 5차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규 위탁체 선정 및 국공립전환 적격여부 심의

나. 재위탁 대상 시설

연번	시설명 (원장)	소재지 (행정동)	현 위탁체 (대표자)	정원/현원	현 위탁기간
1	느티나무 어린이집 (정용기)	홍천사길29 (돈암2동)	대한불교조계종 홍천사 (송현준)	80/57	2020.03.01. ~ 2025.02.28.
2	보문제일 어린이집 (정경숙)	보문로13길3 (보문동)	기독교대한감리회 보문제일교회 (신태하)	47/34	
3	성북생명숲 어린이집 (주혜은)	서경로173 (정릉4동)	개 인 (주혜은)	79/72	
4	순복음 어린이집 (정은미)	오패산로89 (월곡1동)	여의도 순복음성북교회 (정재명)	45/25	
5	연화 어린이집 (김정희)	개운사길60-46 (안암동)	중앙승가대학교 (천원배)	23/-	
6	원정 어린이집 (백남희)	보국문로28길10 (정릉4동)	대한예수교장로회 원정교회 (김윤희)	65/50	
7	키움누리 어린이집 (최미옥)	서경로60 (정릉1동)	개 인 (최미옥)	23/23	

- 1) 위탁기간 : 위탁기간 만료일 이후로부터 5년(예정)
- 2) 수탁기관 선정 : 2024년 제6차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한 재위탁 여부 선정

다. 위탁 사업의 범위

- 1)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 2)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 3)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 1. 17., 2011. 6. 7., 2011. 8. 4., 2018. 12. 11., 2020. 12. 29.>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